

| | |
|------|------------|
| 등록번호 | 건강도시과-1715 |
| 등록일자 | 2015.2.3. |
| 결재일자 | 2015.2.4. |
| 공개구분 | 대시민공개 |

| | | | | | |
|--------|-------------------------|-------------------|------|------|--------------|
| 주무관 | 건강도시팀장 | 건강도시과장 | 보건소장 | 부구청장 | 구청장 |
| 배현우 | 박광일 | 이인걸 | 홍혜정 | 김찬곤 | 02/04 최창식 |
| 협 조 | 주무관 의회법제팀장 기획예산과장 | 이수정 문성수 장형태 | | | |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계획



보 건 소
건강도시과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I 개정 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지방자치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II 개정 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
- 금연지도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III 주요 내용

- 금연지도원 위촉규정 신설(안 제9조의2)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규정 신설(안 제9조의2)

IV

추진일정

- ▣ 조례개정방침 : 2015. 2월
-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실시 : 2015. 2월
- ▣ 입법예고 : 2015. 3월(20일간)
- ▣ 중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5. 3월
- ▣ 구의회 상정 : 2015. 3월
- ▣ 공 포 : 2015. 4월

V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 ▣ 합 의 : 해당없음
-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발췌본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9조의2(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u>①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u> <u>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

조례안 개정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859호, 2014.12.23., 일부개정]

제9조의5(금연지도원)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 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6조의2에서 이동 <2014.11.20.>]